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이노뎁(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149,60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노뎁㈜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이노뎁(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149,60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노뎁㈜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 . 공급사 : ㈜베스트텍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6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 . 공급사명 ㈜베스트텍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 . 공급사 : ㈜베스트텍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6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 . 공급사명 ㈜베스트텍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렉스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렉스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렉스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렉스젠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아이티센클로잇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티센클로잇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아이티센클로잇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5,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아이티센클로잇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새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3,8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새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새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3,8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새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마크애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마크애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제조사·공급사 : ㈜마크애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2,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단, 협의 금액은 낙찰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7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마크애니 (인)